

채무자신고, 어떻게 하나요?



■ 신고기간

2017. 12. 1.(금) ~ 2017. 12. 31.(일)

■ 신고방법
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신고

www.kosaf.go.kr → 학자금대출 → 학자금뱅킹 →
학자금상환지원 → 채무자신고 → 신고

※ 12월 정기 신고기간 동안 입력한 내역에 대하여 신고기간 내
계속 수정 가능

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신고로 더욱 든든해집니다.

취업할 때 까지 상황이 유예되는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!

채무자신고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
건전한 운용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
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
첫 걸음입니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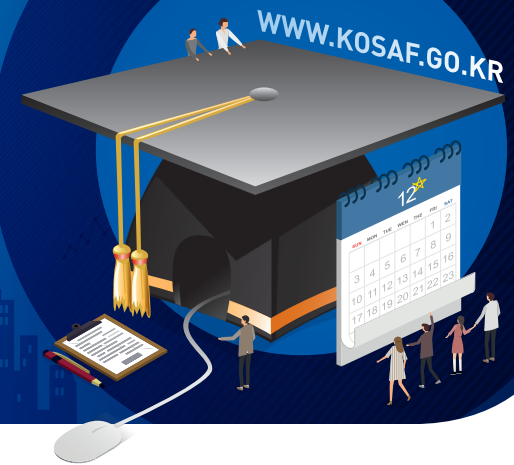


“당신의 꿈은
반드시 이루어집니다.”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여러분

“1년에 1번(12월)”
정기 채무자 신고기간입니다.
잊지마세요!

취업 후 상환 학자금(든든학자금) 대출자라면
누구나 꼭 채무자신고를 해야 합니다.



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(신암동 819-1) 한국장학재단
홈페이지 | www.kosaf.go.kr 대표전화 | 1599-2000





!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라면,
매년 12월 중 반드시 채무자신고를 해야합니다!

■ 채무자신고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는 매년 12월 한 달 동안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, 직장,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, 소득 정보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.

■ 관련근거

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」 제15조, 「동법 시행령」 제7조 채무자의 신고의무

■ 제재조치

채무자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 44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Q1 채무자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?

A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향후 발생할 소득과 연계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액이 결정됩니다. 따라서 대출시점에는 이러한 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대출기간 중 채무자에게 관련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향후의 대출금 상환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Q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도 신고해야 하나요?

A2 채무자신고 의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. 또한, 일반상환방식으로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자의 경우에도 채무자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.

Q3 해외이주유학 신고를 했는데 채무자신고도 해야 하나요?

A3 해외이주유학 신고는 해외이주 및 6개월 이상 해외유학계획자가 본인의 이주/유학 계획을 신고하는 것입니다. 이는 채무자신고와는 별개이므로,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라면 해외이주 유학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 채무자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Q4 채무자신고 시 본인의 대출정보를 왜 확인해야 하나요?

A4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본인의 대출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재단과 채무자간에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환 관련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.

Q5 11월 중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를 다 갚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?

A5 11월 말을 기준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채무자는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며, 11월 30일 이전에 완제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.

Q6 채무자신고 시 소득을 신고했습니다. 상황이 개시되는 건가요?

A6 의무상환 개시 여부 및 의무상환액은 채무자 신고 내용과는 무관합니다. 다만, 향후 채무자 신고정보는 국세청 정보와 연계·관리될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

- ▶ 재단 홈페이지 → 학자금대출 → 학자금뱅킹 → 학자금 상환지원 → 채무자신고 → 신고
- ▶ 문의전화: 1599 - 2000